

무병화인증

[] 신규

[] 갱신

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[신규]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[갱신] 60일 이내
------	------	---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사업장 소재지	
	법인명칭 (종자업등록번호:)	전화번호

신청 내용	신청구분		[] 신규 [] 갱신		
	작물명				
	품종명 (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신고번호)				
	대목명 (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신고번호)				
	생산계획 면적 및 수량	면적(㎡)			
		수량(주)			
		묘목식재일		출하예정일	
	원종·어미나무 관리기관	원종			
		어미나무			
	바이러스·바이로이드 검정기관				

「종자산업법」 제36조의2제2항·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·제2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(갱신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무병화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(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무병화인증(갱신) 신청 종자의 생산·판매 및 보급 계획서 1부 3. 무병화인증(갱신)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1부 4. 「종자산업법 시행규칙」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(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합니다) 1부(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5. 「종자산업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「종자산업법 시행규칙」 제43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	---

작성 방법

1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2.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.
3.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(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).
4.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,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.
5.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,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.
6.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4호는 무병화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, 제5호는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
7. 첨부서류 중 제2호는 품종별로 작성하되, 어미나무 계통이 다를 경우 동일 품종이더라도 어미나무 계통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8. 첨부서류 중 제3호는 무병화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,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9. 첨부서류 중 제4호는 신청품종의 어미나무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 확인서를 말하며 어미나무 계통별로 바이러스 검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처리 절차

